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원무부서장

제 목 진단서 발급 시, 발급 대상 확인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838(2017.6.5.)

2.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발급자	발급 가능 요건	발급요청 시 서류	비고
환자의 친족	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	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	
환자의 형제·자매	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	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	확인서는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사용가능

*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)

**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
<붙임>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표준 양식 1부.

* 붙임문서는 본회 홈페이지 ('협회업무-정책국' 메뉴)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이민정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 본부장 박혜경

시행 : 정책 제 2017-225 (2017.06.12)

우편번호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
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5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mj2100@kha.or.kr